

2023학년도 목포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(안)

□ 관련 법률
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(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)
-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.

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시행규칙 제10조제1항)

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
정기교육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이상	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
신규교육·훈련	신규채용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이상	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
	대학생 및 대학원생 으로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	2시간이상	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특별안전 교육·훈련	중대사고 발생 및 연구주체의 장 필요시	2시간이상	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
□ 현 황

- 정기교육 : 호남지역 연구실안전 협의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교육 실시

* 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이수 현황

구 분	교육대상자	교육이수자	이수율
1학기	3,466명	3,408명	98.3%
2학기	3,407명	3,307명	97.5%
신규자	836명	821명	98.2%

- 신규자 교육 : 학부·대학원 신입생 및 신규 연구원에 대하여 각 연구실별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내용으로 연구실책임자가 교육 후 교육일지 작성하여 제출.

□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

○ 목 적

교내 연구실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(사이버 교육, 집합교육, 체험교육 등)을 병행 실시하여 연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교육 과정

가. 정기교육 : 호남지역 연구실안전협의회 공동운영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

- 운영시간 : 1학기 6시간, 2학기 6시간

- 운영과목 : 필수 4차시 4과목, 선택 12차시 12과목

나. 신규자 교육 : 각 연구실별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연구실책임자가 상시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제출.

※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실시

다. 집합 및 체험교육 :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유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체험교육 실시 예정.

○ 소요예산 : 5,300,000원

-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사용료 : 5,300,000원(교육대상 : 4,000여명)